



제 50 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민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서

기관 명칭	Overseas Merchandise Inspection Co., Ltd. (OMIC BANGKOK)
소재지	12-14 Yen Akas Soi 3, Yen Akas Rd, Chongnonsri, Yannawa, Bangkok 10120, Thailand
대표자	Pattarawan Vannacharoen
서명권자	Pattarawan Vannacharoen, Kritsana Sirirattana, Akira Morimoto, Orawan Thummavipart
시험·검사 대상 품목	농·임·수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기구 또는 용기·포장
시험·검사항 목	이화학, 미생물, 잔류농약, 잔류동물용의약품
유효기간	2024.6.12. ~ 2028.6.11. (최초 지정일 : 2005. 4. 8.)

위 기관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외시험 · 검사기관 준수사항>

1. 국외시험 · 검사기관은 「식품 · 의약품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호 및 제2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시험 · 검사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인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할 수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시행규칙 제11조제1호 및 제2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시험하고 판정하여야 합니다.
2. 국외시험 ·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가. 판정이 모호한 시험 · 검사결과에 대하여 확인 시험 ·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행위
 - 나. 유효기간이 경과된 표준품, 시약 또는 배지 등을 사용하는 행위. 다만, 유효성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다. 의뢰된 시험 · 검사 항목이나 해당 시료에 대한 기준 · 규격을 시험 · 검사할 때 그 시험 · 검사 항목을 빠뜨리거나 다른 항목의 기준 · 규격을 적용하는 행위
3. 국외시험 · 검사기관은 시험 · 검사성적서, 시험 · 검사일지 등의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합니다)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4. 국외시험 · 검사기관은 매년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시험 · 검사성적서를 발행한 전년도 실적
 - 나. 해당 시험 · 검사기관의 정부가 시험 · 검사능력을 평가한 자료 또는 국내외 숙련도 평가에 참여하여 시험 · 검사능력을 평가받은 자료